Smiling Daiseo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12.

김 태 형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태형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는 목적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2조 및 제3조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대리하는 사람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규칙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222

발의일자: 2021. 11. 25.

발 의 자: 김태형, 김화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안 제2조~제3조)

다. 책임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59조, 제60조 및 제103조

2) 「직무대리규정」 제4조, 제5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무대리 명령서

1. 직무대리 직명:

2.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3. 직무대리 기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본부장·단장·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